# 대공황과 1932년 합병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 통화위원회 체제 아래의 은행업

중국계 은행들은 아무런 보호도 제공하지 않는 통화제도 안에서 영업하였습니다. 통화위원회(currency board) 체제에서 현지 통화는 파운드화 준비금으로 전액 뒷받침되는 경우에만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통화위원회는 파운드화를 받고 지폐를 발행하였을 뿐, 은행에 대출하거나 은행을 감독할 수 없었습니다. 허프(Huff)는 이 체제를 고전적 금본위제의 극단적 형태라고 부릅니다. 이 체제에서는 국제수지 적자가 곧바로 통화량 축소로 이어졌습니다. 말라야의 본원통화는 1919년부터 1922년 사이에 거의 절반으로 줄었고, 1929년 말부터 2년 동안 다시 3분의 1이 줄었습니다.[1]

유럽계 환은행들은 런던이나 홍콩의 본점에 기댈 수 있었습니다. 본점들은 도매 신용시장에 접근할 수 있었고 지점에 대해 중앙은행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계 은행들은 오로지 자체 자원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통상 예금의 약 절반을 유동자산으로 보유하였고, 그 자금을 유럽계 은행에 예치하였습니다. 허프는 중국계 은행이 동원한 자금의 절반가량이 단순한 유동성으로 남았다고 결론짓습니다.[2] 이러한 신중함은 평상시에는 예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금자를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은행의 규모를 작게 묶어 두었고, 현지 저축의 일부를 경쟁 상대인 유럽계 금융기관으로 넘겨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 말라야의 불황

대공황은 말라야를 유달리 강하게 강타하였습니다. 말라야의 교역조건은 1925년부터 1929년 사이에 절반 넘게 악화되었고, 1932년까지 다시 절반 넘게 악화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실질환율은 1929년부터 1932년 사이에 두 배 넘게 올랐는데, 허프의 정의에 따르면 이는 가파른 실질 평가절하를 뜻합니다. 1929년을 100으로 하는 허프의 지수에서 교역조건은 1925년에 244.2, 1932년에 47.1이었습니다.[3] 고무 농장, 소농, 상인, 그리고 이들의 구매력에 의존하던 제조업자들이 함께 타격을 입었습니다.

중국계 은행들도 전반적인 곤경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1929년 말 3,700만 해협달러였던 예금은 1932년까지 거의 5분의 1이 줄었고, 같은 기간 자산은 22% 감소하였습니다. 경제학자 S. Y. 리(S. Y. Lee)는 1966년에 사실상 모든 현지 중국계 은행과 일부 해외 은행이 재정난에 빠져 있었다고 기록하였습니다.[4]

## 파운드화의 금본위제 이탈

결정타는 외환시장에서 왔습니다. 1931년 9월 영국이 금본위제를 이탈하자 통화위원회 체제에 따라 해협달러도 함께 이탈하였습니다. 길더에 묶여 있던 네덜란드령 동인도와 은본위제를 채택하고 있던 홍콩은 파운드화와 함께 평가절하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에 있던 화풍은행(Ho Hong Bank)과 화교은행(Oversea-Chinese Bank)의 지점들은 현지 통화로 예금을 받아 그 대부분을 해협달러로 바꾸어 두었습니다. 해협달러가 길더와 홍콩달러에 대해 하락하자 이들 지점의 부채가 자산을 넘어섰습니다.[5]

손실은 은행의 자본에 비해 컸습니다. 말라야 은행사에 관한 한 문헌은 1930년 이후 화풍은행의 외환 손실을 200만 달러 이상으로 추산합니다. 예금자들은 빠르게 반응하였습니다. 1931년 말부터 1932년 중반 사이에 화풍은행의 예금은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절반으로 줄었고, 화교은행의 예금은 30% 감소하였습니다. 화교은행은 랑군 지점에서 예금인출 사태도 겪었습니다. 허프는 헤지되지 않은 외환 포지션을 기초적인 실수라고 평가하며, 손실 소식이 촉발한 예금 인출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설명합니다.[6]

## 탄카키에 대한 편중 여신

두 번째 약점은 대출 포트폴리오에 있었습니다. 세 복건계 은행은 모두 단 한 명의 차주인 탄카키(Tan Kah Kee)에게 거액을 대출하였습니다. 그는 고무 재벌이자 제조업자로, 그의 사업은 그에게 '말라야의 헨리 포드'라는 별칭을 안겨 주었습니다. 탄카키는 1890년 싱가포르에 도착하여 고무 농장, 공장, 부동산, 해운을 아우르는 복합기업을 일구었습니다. 그러나 1931년 무렵 말라야와 그의 회사들이 수출하던 아시아 시장의 수요가 위축되면서 제조업 부문은 심각한 어려움에 빠졌고, 고무 가격 하락으로 농장의 가치도 떨어졌습니다.[7]

이러한 편중은 방언 은행이라는 구조 자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탄카키는 그 세대에서 가장 저명한 복건계 지도자였고, 혼인과 사업으로 은행 이사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화상은행(Chinese Commercial Bank)의 부회장 리콩치안(Lee Kong Chian)은 1915년 탄카키의 회사에 들어갔고 1920년 그의 딸과 결혼하였습니다. 각 은행은 탄카키라는 사람을 잘 알았지만, 어느 은행도 그의 차입 총액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은행가였던 얍펭겍(Yap Pheng Geck)은 훗날 현지 은행들이 1931년에야 비로소 자신들이 모두 합쳐 탄카키에게 너무 많이 대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회고하였습니다.[8] 개인적 신뢰는 은행가들에게 탄카키가 정직한 사람인지를 알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른 모든 이에게 얼마를 빚지고 있는지는 그의 대차대조표 전체를 볼 수 있어야만 알 수 있었습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 합병

복건계 공동체가 내놓은 해법은 합병이었습니다. 독자적으로 버틸 수 없었던 화교은행은 화풍은행에 합병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어 더 탄탄하던 화상은행도 이 계획에 합류하였습니다. OCBC 자체의 연혁은 당시 화상은행 부회장이던 리콩치안이 합병을 주도하였다고 기록하지만, 다른 문헌은 화교은행의 탄이안키암(Tan Ean Kiam)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고 봅니다. 공식 발표는 이사와 주주들의 상호 의사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 은행 가운데 두 곳이 상당한 곤경에 처해 있었습니다.[9]

새로운 화교은행공사(Oversea-Chinese Banking Corporation, OCBC)는 1932년 10월 31일 납입자본금 1,000만 달러로 설립되었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은 수권자본금을 4,000만 달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10] 그 이후의 절차에 관해서는 자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한 문헌은 합병 계약을 1932년 12월 14일, 화풍은행의 통합을 1932년 12월 31일로 기록합니다. 영업 개시일은 한 자료에서는 1933년 1월 2일, 다른 자료에서는 1933년 2월로 나옵니다.[11] 가장 그럴듯한 해석은 법인이 10월에 설립되고, 12월에 영업 양도가 합의되었으며, 합병 은행이 1933년 초에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새 은행은 세 복건계 은행을 일군 사람들이 이끌었습니다. 리콩치안은 1932년 부회장, 1938년 회장이 되었고, 1967년 사망 직전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다른 문헌은 사망할 때까지라고 기록합니다). 화상은행의 사무원이었다가 후에 부서기가 된 젊은 탄친투안(Tan Chin Tuan)은 1933년 합병 은행의 지배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은행에 담보로 잡힌 부동산을 관리하던 자회사 이스턴 리얼티(Eastern Realty Company)도 맡았습니다.[12] 이 사실은 많은 것을 말해 줍니다. 합병 은행 자산의 상당 부분이 더 이상 상환할 수 없게 된 차주들에게서 넘겨받은 부동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부동산 가치가 회복될 때까지 이를 관리할 전문 기구가 필요하였습니다.

합병은 은행과 창업자들의 사업 제국 사이의 관계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화풍 그룹을 통해 해운, 쌀, 착유 공장, 시멘트 사업을 아울렀던 림펭시앙(Lim Peng Siang)은 1931년 해운 지분을 해협기선회사(Straits Steamship Company)에 90만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해협달러에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착유 공장을 재편하였습니다. 1918년 100만 해협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울루판단(Ulu Pandan)에 세운 시멘트 공장은 1932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1936년 그는 화풍기선회사(Ho Hong Steamship Company)의 주식 대부분을 OCBC에 매각하였습니다.[13] 이 일련의 과정은 대공황이 자체 은행을 거느린 상인 그룹이라는 옛 모델을 어떻게 해체하였는지 보여 줍니다. 은행은 더 강한 기관이 되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창업자들의 사업 가운데 남은 부분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 최종대부자 없는 은행업

허프는 이 위기에 대해, 은행의 외환 포지션과 대형 차주에 대한 총 익스포저를 감시할 수 있는 감독기관이 있었다면 말라야 중국계 은행업의 거의 시스템적인 붕괴로 번진 사태를 아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는 역설도 하나 지적합니다. 중앙은행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계 은행들이 보유한 막대한 준비금이 부분적으로 중앙은행의 대체물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대공황 기간 동안 말라야와 필리핀에서 완전히 파산한 중국계 은행은 한 곳뿐이었습니다.[14] 합병 자체가 민간 차원의 최종대부자 기능을 수행한 셈입니다. 더 건전한 은행과 공동체 지도자들이 부실 은행의 손실을 흡수하여, 예금 인출 사태가 복건계 은행 체계 전체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식민 정부는 위기 이후 은행법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말라야는 통화위원회 제도를 신중하게 개혁하는 길을 택하였고, 실효적인 은행 규제는 1950년대에 이르러서야 도입되었습니다.[15] 제C편 제V장은 이러한 개혁에서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에 이르는 과정을 다룹니다.

# 주

1. W. G. Huff, “Currency Boards and Chinese Banking Development”, 2003, 3면: 현지 본원통화는 외환준비금으로 100% 뒷받침되는 경우에만 존재함; 통화위원회는 “could not act as a lender of last resort, nor did they regulate the banking system”이며 “amounted to an extreme version of the classical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gold standard"; W. G. Huff, "Currency Boards and Chinese Banking Development", 2003, 4면: 본원통화는 "contracted by almost a half between 1919 and 1922 and by a third in the two years beginning at the end of 1929". ↩

2. W. G. Huff, "Currency Boards and Chinese Banking Development", 2003, 9면: 각 중국계 은행은 오로지 자체 자원에 의존해야 했음; 중국계 은행들은 "normally kept 50 per cent of their deposits liquid and in Malaya deposited these with European banks"이며, 유럽계 은행들은 해외 도매 신용시장에 접근할 수 있었음; W. G. Huff, "Currency Boards and Chinese Banking Development", 2003, 9면: "Something like half of the finance mobilized by Chinese banks ended up as no more than liquidity.". ↩

3. W. G. Huff, "Currency Boards and Chinese Banking Development", 2003, 11면: 말라야의 교역조건은 "more than halved between 1925 and 1929 and by 1932 had more than halved again"; "Between 1929 and 1932 Malaya's real exchange rate more than doubled"이며, 실질환율 상승은 "a real devaluation"을 나타냄; W. G. Huff, "Currency Boards and Chinese Banking Development", 2003, 표 1, 20면: 말라야 교역조건(1929 = 100): 1925년 244.2, 1932년 47.1. ↩

4. W. G. Huff, "Currency Boards and Chinese Banking Development", 2003, 표 2, 21면(해협식민지 설립 은행의 예금, 1929년 3,700만 해협달러; 1932년 지수 81.6) 및 6면과 13면(예금은 1929년부터 1932년까지 "by almost a fifth" 감소; 자산은 "declined by fully 22 per cent", B. K. Short, "Indigenous banking in an early period of development: the Straits Settlements, 1914–1940", *Malayan Economic Review*, vol. 16, 1971, 62면 인용); W. G. Huff, "Currency Boards and Chinese Banking Development", 2003, 13면, S. Y. Lee, "The development of commercial banking in Singapore and the states of Malaya", *Malayan Economic Review*, vol. 11, 1966, 89면 인용: "practically all the local Chinese banks as well as some overseas banks were in financial difficulty". ↩

5. W. G. Huff, "Currency Boards and Chinese Banking Development", 2003, 13–14면: "In September 1931, when Britain left the gold standard, so too, under the currency board system, did Malaya. But Indonesia, linked to the guilder,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and Hong Kong, on the silver standard, did not devalue along with Britain."; W. G. Huff, "Currency Boards and Chinese Banking Development", 2003, 14면: 지점들은 "had taken deposits in Hong Kong and Indonesian currency but apparently converted these mostly into Straits dollars"이었으므로 금본위제 이탈로 "left them with greater liabilities than assets". ↩

6. Saran Singh, "A Brief History of Banks in the Straits Settlements and Malaysia 1840–1986 (Part II)", 2011: 화풍은행은 1930년 이후 외환에서 200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음; W. G. Huff, "Currency Boards and Chinese Banking Development", 2003, 13–14면: "Between the end of 1931 and mid-1932 deposits in the Ho Hong Bank halved and in the Oversea-Chinese Bank fell by 30 per cent"; 화교은행은 "experienced a run on its Rangoon office"(Short, 1971 인용); W. G. Huff, "Currency Boards and Chinese Banking Development", 2003, 14면: "The Chinese banks' unhedged foreign exchange portfolios were an elementary mistake.". ↩

7. W. G. Huff, "Currency Boards and Chinese Banking Development", 2003, 14면: "all three Chinese banks had lent heavily to a single borrower, Tan Kah Kee", 제조업에서도 활발히 활동하여 "to be called the 'Henry Ford of Malaya'"였던 고무 재벌; Wikipedia, "Tan Kah Kee"(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874년 10월 21일 푸젠성 지메이 출생; 1890년 싱가포르로 이주; 고무 농장, 제조업, 부동산, 해운을 아우르는 복합기업을 일굼; 1961년 8월 12일 사망; W. G. Huff, "Currency Boards and Chinese Banking Development", 2003, 14면: 1931년 무렵 수요 위축으로 탄카키의 제조업 제국이 "was in serious trouble"임이 분명해졌고, 고무 가격 하락으로 고무 자산의 가치도 줄어듦. ↩

8. Wikipedia, "Lee Kong Chian"(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893년 10월 18일 푸젠성 난안 출생; 1915년 탄카키의 회사에 입사; 1920년 탄카키의 딸 탄 아이레(Tan Ai Leh)와 결혼; 화상은행 부회장; 1932년부터 OCBC 부회장, 1938년부터 회장; 1967년 6월 2일 사망; W. G. Huff, "Currency Boards and Chinese Banking Development", 2003, 14면, Yap Pheng Geck, *Scholar, Banker,*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Gentleman Soldier*, 1982, 31면 인용: “The local [Chinese] banks found that collectively, they had lent him [Tan] too much”. ↩

9. OCBC, “Milestones”(ocbc.com,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932년 대공황 중에 세 전신 은행이 합병하였으며 “with Lee Kong Chian leading the amalgamation”; Wikipedia, “OCBC Bank”(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리콩치안이 중심적 역할을 함; 화교은행의 공동 설립자이자 전무이사였던 탄 이안키암이 합병을 주도함; W. G. Huff, “Currency Boards and Chinese Banking Development”, 2003, 13면: 공식 발표는 “referred to merger and the ‘mutual desire of directors and shareholders’, in fact two of the three banks were in considerable distress”. ↩

10. National Library Board, Singapore Infopedia, “Oversea-Chinese Banking Corporation”(SIP_2018-04-04_094138): 1932년 10월 31일 수권자본금 4,000만 해협달러, 납입자본금 1,000만 해협달러로 설립; 1932년 12월 14일 합병 계약 체결; 1933년 1월 2일 영업 개시. ↩

11. Wikipedia, “OCBC Bank”(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세 은행은 1932년 10월 31일 합병함; Saran Singh, “A Brief History of Banks in the Straits Settlements and Malaysia 1840–1986 (Part II)”, 2011: 새 은행의 납입자본금 1,000만 달러; Saran Singh, “A Brief History of Banks in the Straits Settlements and Malaysia 1840–1986 (Part II)”, 2011: 합병 계약 1932년 12월 14일; 화풍은행은 1932년 12월 31일 OCBC에 통합됨; Wikipedia, “Ho Hong Bank”(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OCBC는 1933년 1월 2일 업무를 시작함; Wikipedia, “OCBC Bank”(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은행은 1933년 2월 영업을 시작함. ↩

12. Wikipedia, “OCBC Bank”(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리콩치안은 1932년부터 부회장, 1938년부터 1967년 사망 직전까지 회장; Wikipedia, “Lee Kong Chian”(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938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회장; ISEAS, “Biographical Notes: Tan Chin Tuan (1908–2005)”, 2023, 1면: 1926년 9월 무렵 탄친투안은 화상은행의 부서기였음; 1933년 합병 이후 OCBC의 지배인으로 선임됨; 은행에 담보로 잡힌 부동산을 관리하던 OCBC 자회사 Eastern Realty Company Limited를 감독함.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13. Wikipedia, “Lim Peng Siang”(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Ho Hong Portland Cement Works는 1918년 100만 해협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울루판단에 문을 열었고 1932년에 폐쇄됨; 1931년 그는 해운 지분을 Straits Steamship Company에 90만 해협달러에 매각하고 Ho Hong Oil Mills를 재편함; 1936년 Ho Hong Steamship Company Ltd.의 주식 대부분을 Oversea Chinese Banking Corporation에 매각함. ↩

14. W. G. Huff, “Currency Boards and Chinese Banking Development”, 2003, 14–15면: 감독기관은 “would have been able to monitor the banks’ foreign exchange positions and have had a knowledge of their loan portfolios as a whole”였을 것이며, 이를 통해 “a near systemic collapse in Malaya’s Chinese banking sector”를 아마 막을 수 있었을 것임; W. G. Huff, “Currency Boards and Chinese Banking Development”, 2003, 13면: 막대한 준비금은 중앙은행이 없는 상황에서의 신중한 대응을 시사함; “In the 1930s depression only one of the Malayan and Philippines Chinese banks failed entirely”. ↩

15. W. G. Huff, “Currency Boards and Chinese Banking Development”, 2003, 17–18면: 전후 말라야는 “a more cautious … policy of reforms in the 1950s to the currency board system and introduction of effective regulatory measures”를 따름(P. J. Drake, *Financial Development in Malaya and Singapore*, 1969, 69–72면 인용). ↩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